

협회적하약관(A)

83.3.1 인가

INSTITUTE CARGO CLAUSES (A)

담보위험

1. 이 보험은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함. 단, 하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한 위험은 제외함. 위험약관
2. 이 보험은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서 또는 이 보험의 기타 조항에서 제외한 원인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피함에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해손 및 구조비를 담보함. 공동해손 및 구조비의 정산 또는 결정은 해상운송계약 및/또는 준거법 및 관례에 따름. 공동해손 약관
3. 이 보험에서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상화물 운송계약 “쌍방과실충돌” 약관에 의한 피보험자의 부담액중 보험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에 관한 부분을 지급해 줌. 상기약관에 의거 선주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함.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선주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권리를 가짐. 쌍방과실충돌 약관

면책조항

4.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함. 일반면책 약관
 - 4.1 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에 기인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4.2 피보험의 목적의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소모
 - 4.3 보험의 목적의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본 조항 4.3 에 있어서 “포장”이라함은 “콘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에 적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함. 단, 그와같은 적화는 이 보험의 개시전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한함.)
 - 4.4 보험의 목적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4.5 지연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일지라도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상기 제 2 조에서 지급할 비용은 제외함.)
 -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
 - 4.7 원자력 또는 핵의분열 및/또는 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능이나 방사성물질을 응용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
5. 5.1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함. 불내항 및 부적합 면책약관

선박 또는 부선의 불내항

보험의 목적의 안전운송을 위한 선박, 부선, 운송용구, 콘테이너 또는 리프트벤의 부적합.

단, 보험의 목적을 적재할때에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와 같은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함.

5.2 보험자는 선박의 내항 및 보험의 목적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함에 대한 목시 담보의 일체의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리를 포기함. 단,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러한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함.
6.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함. 전쟁면책 약관
 - 6.1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투쟁, 교전국에 의하여 또는 교전국에 대하여 행해진 적대행위
 - 6.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해적행위제외) 및 그러한 행위의 결과 또는 그러한 행위의 기도.

6.3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또는 기타의 유기된 전쟁무기	
7.	여하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함.	동맹과업 면책약관
7.1	동맹과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7.2	동맹과업, 직장폐쇄, 노동분쟁, 소요 또는 폭동의 결과로 생긴 것.	
7.3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	
보험기간		
8.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개시를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를 떠날 때에 개시되고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되며,	운송약관
8.1.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이건 목적지에서 이건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중 어느것에 사용코저 택한 기타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과정에서가 아닌 보관 또는	
8.1.2.2	할당 또는 분배	
	또는	
8.1.3	최종 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화물의 하역 완료후 60 일이 경과될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생긴때에 종료함.	
8.2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양하후 그러나 이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화물이 이 보험에 부보된 목적지 이외의 장소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은 상기 보험종료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나, 그러한 다른 목적지로 운송이 개시될 때 종료함.	
8.3	이 보험은(상기 보험종료의 규정 및 하기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지연, 일체의 이로, 부득이한 양하, 재선적 또는 환적 및 해상운송계약상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부여된 자유재량권의 행사로부터 생기는 위험의 변경기간중 유효하게 계속됨.	
9.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운송계약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지 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되거나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상기 제 8 조에 규정된 화물의 인도이전에 운송이 종료될 경우에는 이 보험도 또한 종료됨.	운송계약 종료약관
	단,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담보의 계속을 요청할 경우에 보험자의 요구가 있으면 추가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보험은 다음의 시점까지 유효하게 계속됨.	
9.1	화물이 상기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매각된 후 인도될때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항구 또는 지역에 피보험화물의 도착후 60 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생길때까지	
	또는	
9.2	만약 화물이 상기 60 일의 기간(또는 합의하에 60 일의 기간을 연장한 기간) 내에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또는 기타의 목적지에 계반될 경우에는 상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이 종료될때까지.	
10.	이 보험의 개시후 목적지가 피보험자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추후에 협정되어야 할 보험료 및 보험조건에 의하여 담보가 계속됨.	항해변경 약관
보험금 청구		
11.	11.1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시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됨.	피보험이익 약관
11.2	상기 11.1 의 규정에 따르지만 피보험손해가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발생하였을지라도 피보험자가 그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고 보험자가 물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담보기간	

중에 생긴 피보험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12.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이 발생한 결과로, 피보험운송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보험의 목적의 목적 지이외의 항구 또는 지역에서 종료될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양하하고, 보관하고,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계반함으로 인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함. 이 제 12 조는 공동해손 또는 구조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및 제 7 조에 규정된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 태만,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함.

계반비용 약관

13.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때, 또는 보험의 목적을 회복시켜 거기에 손질을 하고, 그것을 담보목적지까지 계속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것 같기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위부하지 않는 한, 이 보험증권하에서는 보상되지 않음.

추정전손 약관

14. 14.1 이 보험의 피보험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별도의 증액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이 화물의 협정 가액은 이 보험 및 이와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총보험금액으로 증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서의 보상책임은 총보험금액에 대한 이 보험의 보험금액의 비율로써 부담하게 됨.

증액 약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는 모든 타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4.2 이 보험이 증액보험일 경우에는 다음의 약관을 적용함 :

이 화물의 협정가액은 원보험 및 피보험자에 의하여 그 화물에 대해 부보되어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모든 증액보험의 총보험금액과 동액으로 간주되며 이 보험에서의 보상책임은 총보험금액에 대한 이 보험의 보험금액의 비율로써 부담하게 됨.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모든 타보험의 보험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험이익

15. 이 보험은 운송인 및 기타의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됨.

보험이익 불공여약관

손해경감

16.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그 대리인의 의무임.

피보험자 의무약관

16.1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는것,

그리고

16.2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 3 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여 놓는 것,

그리고 보험자는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부가하여 상기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함.

17. 보험의 목적을 구조하고 보호하고 또는 회복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승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아니함.

포기 약관

지연의 방지

18.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하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임.

신속조치 약관

법률 및 관례

19.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준거함.

영국법률 및 관례
약관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 의거 “계속 담보를 받는” 사유의 발생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보험자에게 통지함을 요하며 계속 담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본 의무의 이행여부에 달려있음